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4년 6월 2일 김형근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남녀 공무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 삶의 질 제고와 가정을 중시하는 도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여성공무원의 여성보건휴가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함. : 제18조제2항(안)
- 특별휴가 규정 중 양성평등을 위해 여자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변경 : 제18조제3항(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제18조제7항(안)

####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남녀 공무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 삶의 질 제고와 가정을 중시하는 도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여성공무원의 여성보건휴가를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하고(안 제18조제2항), 여성공무원으로 한정된 생후 1년간 1시간의 육아시간을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고(안 제18조제3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휴가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제7항)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